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제5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2 감 사 개 요

날 짜	시 간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장 소	비고
'16.11.24(화)	10:00	○서울특별시시장 비서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3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소속정당	위원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더불어당	김선갑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의사지원팀장 김옥희 전문위원 강상원 임기제 6급 박순종 임기제 6급 김우영 행정 6급 이종우 행정 7급 이범일 임기제 7급 윤혜진 워드 7급 이경란 워드 7급 양경희 시간선택임기제라급 소정훈 시간선택임기제라급 박정열 속기사 2명 음향요원 1명
부위원장	더불어당	김기대	
	새누리당	송재형	
위원	더불어당	김동률	
		김미경	
		김영한	
		문형주	
		박호근	
		장우윤	
		한명희	
	새누리당	박마루	
		우미경	
	국민의당	최관술	

4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 감사 사항
서울특별시 장 비서실 서울특별시	○ 감사자료 확인 ○ 현황보고 청취 ○ 질의·답변	○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시장 보좌 사항 ○ 시의회, 내·부기관과의 협력 및 협치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정무부시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제출 요구 ○출석 요구·증언(의견진술)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추진사업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사항 ○시정 주요정책 등의 조정협의를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서류 제출 요구 ○출석 요구·증언(의견진술) ○기 타 	<p data-bbox="730 409 927 439">< 공 보 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대변인실 지원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협력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뉴미디어 홍보 총괄 및 이슈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 ○의정홍보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p data-bbox="730 1144 954 1173">< 의정담당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사무처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부서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p>< 의사담당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본회의장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각종 통계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의원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U-의회시스템 구축(의원요구자료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p>< 입법담당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에 관한 사항 ○ 의회·시·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입법정책 및 지방자치제도 등에 대한 동향, 운용사례 분석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 법제 및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연구위원회 등 운영지원에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p>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의 운영 및 의회 관련 각종자료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 U-신문고 설치·운영 및 시의회에 바란다 등 민원처리 총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의 기획·연구·조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p>< 예산정책담당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소관 사무와 관련한 조사 및 분석 ○ 시·교육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재정정책 관련 등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통합 재정지수 및 채무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 관련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p>< 기 타 사 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총 괄

감사대상기관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64	54	10
서울특별시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19	15	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45	39	6

□ 시정·처리요구 ----- 52건

○ 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14건

- (환경분야 예산 확대)**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서울시 환경분야 예산현황’을 보면 추가적인 지원도 없었고 집행률도 그리 높지 않았음. 환경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정립)**정무부시장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최근 3년간 8천여 만원을 소속 직원 명절격려 물품 구매로 집행함. 더구나 규칙상 선물을 줄 수 있는 소속 직원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마다 그 수의 편차(최하 30명, 최고 306명)가 심하게 나는 등 규칙 위반의 소지가 보임. 명확한 집행 기준을 확립하여 집행하기 바람.
-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사업 집행을 부진사유/조치방안)**‘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사업’(보육담당관)의 집행률이 32.4%(예산현액 107,100천원, 집행액 34,750천원, 9.30일 기준)에 불과함.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하기 바람.
- (협치총괄지원관 임용 적정성 확인/조치)**김일영 협치총괄지원관 임용의 적정성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조치하기 바람.
- (별정직 공무원 임용 절차 개선)**시장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21명) 임용 시 공고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는데, 이는 능력과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기회 박탈과 같은 것으로 임용의 기회가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임기제공무원 적정 안배)**2011년 이후 임기제 공무원이 4급 이상 32명, 5급 30명 등 62명(40%) 증가하였음. 이는 전문가 영입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내

부 직업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함에 따라 직원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

7. **(시장수행 직원 여비 지급 적정성 검토)**시장수행을 업무로 하는 직원에게 수행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2년간 시장수행 직원들의 개인별 출장비 지급 내역을 제출 바람.
8. **(임기말 재단 등 설립 신중검토)**시장 임기가 한 해 남은 지금 120 다산콜재단 등 투자·출연기관이 많이 증설됨에 따라 민간부분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시장 철학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보은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됨. 특히 투자출연기관은 한 번 설립되면 폐쇄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9.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시장 비서실에서 시의회와의 상시적인 소통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상으로는 소통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몇 차례의 소통도 의장단 등 의회지도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외된 일반 평의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10. **(자치구와의 소통 강화)**자치구와의 소통 강화로 한전부지개발, 서울역고가 공원 조성, 제2시민청 설립 등 산재한 서울시-자치구간의 갈등사항에 대해 정무부시장이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11.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결정 존중)**현장시장실 관련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6차례 부결된 안전이 13년 초에 성동구 현장시장실을 통한 시장의 한마디 말로 사업이 다시 시작됐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었음. 소관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시장의 일방적 결정은 적절치 않음.
12. **(투자출연기관 시설물 무상 사용 적정성 검토)**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만 유일하게 법률의 근거도 없이 조례상으로 투자출연기관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폐지 등 조치가 필요함.
13. **(보고서에 쉬운 용어 사용)**업무보고서에 어려운 용어(외래어, 한자 등)를 많이 사용했는데 시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순화된 쉬운 용어를 사용하기 바람.
14. **(정무부시장실 민원처리절차 및 역할 재정립)**정무부시장실 소관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마련과 자료관리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정무부시장실의 역할, 기능, 소관업무에 대한 재정립하기 바람.
15.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철저)**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허술함. 운행일지 철저히 작성하기 바람.

○ 의회사무처 - 38건

1.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및 적극적 사업발굴)**201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 223억 3천만원은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2%로 타지자체 사무처와 비교 시 최저 수준이며, 연평균 예산 신장률도 서울시에 한참 뒤진 0.37%임. 이는 기관별 예산 실링제로 인해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에 자율성이 없고 더불

어 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소극적 임을 반증하는 것임.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실링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 이며, 사무처는 타 시·도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자체 정책 발굴을 통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집행율 제고를 위한 무리한 집행 지양)**예산절감을 통한 불용률은 장려해야 되는 것으로 연말에 집행률 상향을 위한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3. **(사업비 삭감사업 재추진 부적절)**2016년 예산심사 시 낭비성 사업으로 전액 삭감되었던 ‘서울시의회 의정 25년사 책자 발간사업’(예산액 4,700만원)이 현재 ‘서울의정 25시 비전북’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재추진 중에 있음.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부적절한 조치임.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용도에 맞게 집행)**업무추진비 사용시 비서실, 사무처 식대 지양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된 집행과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를 철저히 하여 집행의 청렴성·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
5. **(수의계약 지양 및 계약 투명성 제고)**지방계약법상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나 사무처가 지난 3년간 체결한 계약 371건 중 일반경쟁은 단 4건에 불과하였고 78%가 수의계약이었음.
이는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비해 계약단가가 높아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 경쟁이나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의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ex)디지털 전광판 계약)
6. **(유명무실한 위원회 기능정상 회복)**의회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차원 에서 전반기 의회개혁특위에서 제안된 ‘인사추천위원회’와 ‘계약투명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기능 회복이 필요함.
7.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기준 확립)**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시 명확한 배분 및 집행기준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8. **(의원 공무국외여행 투명성·형평성 제고)**해외도시 방문 일정과 방문단 구성 방법 등이 연초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일이 잦으므로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해외자매도시 방문·비교시찰 등 의원 공무국외출장에서 의원별 참여 기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의원교육연수계획 수립 절차 개선)**‘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 세부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10.(**사업 성과지표 재점검**)매년 사업별 성과지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지표를 보수적으로 하향 수립해오고 있어, 사업성과 평가 방법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성과지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11.(**업무보고 양식 개선**)현재 사용 중인 주요업무보고의 일반적 서식(추진계획 -추진실적-향후계획)에 ‘추진목표’ 항목을 추가하여 목표대비 실적 표기로 한눈에 사업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12.(**의원수첩 제작주기 실효성 있게 조정**)의원수첩과 의회 홍보물은 시의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원구성과 함께 2년에 한 번 꼴로 대량생산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만을 위한 것으로 해석됨. 특히 2016년 하반기는 7월 원구성 이후 9월말에서야 제작됨.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여 적시 작성 및 적재적소에 배부 및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13.(**의회공간 부족 해소**)서울시의회 청사 공간이 법정기준 24,930㎡에 2,652㎡ (804평) 부족한 22,278㎡에 불과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실 협소, 입법조사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 부족 등 큰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상임위 회의실 확대, 의원수 감원(114 → 106명)에 따른 공실의 적정배분, 장기적으로는 별도 부지 확보 또는 기존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4.(**근무 환경 개선**)밀폐된 회의실의 카페트 청소를 더 강화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 15.(**장애인시설공사 마무리 보강**)공사의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금회 공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공사 시에는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람.
- 16.(**도청탐지시스템 실효성 검토/조치**)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의장실 등 46개소에 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한 건의 적발 건수도 없었음. 특히 이 장비는 당초 계획된 도청 ‘방지’ 기능이 아닌 도청의 발생 유무를 사후에 ‘탐지’하는 장비로서 계약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장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후속조치가 필요함.
- 17.(**직원 휴게공간 보완**)의회 본관의 경우 지하 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이 유일한 직원 휴식공간이나 시설 노후화로 직원 이용률이 낮음. 리모델링 또는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함.
- 18.(**예산정책담당관 팀별 역할정립 및 직원적정 배치**)예산정책담당관실의 팀별 업무 차별성이 모호함. 최근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팀별 재배치는 이러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임. 팀별 명확한 역할 정리와 더불어 임기제공무원이 채용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 19.(**민원관리팀 성과 제고**)2015.2월 신설된 민원관리팀은 실질 민원지원 업무 비중이 약하고 접수 민원의 전달, 또는 이첩 수준에 그치는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성

과가 부족함. 특히, 내년부터 시민권익담당관의 주무팀으로 흡수되어 민원과 공약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부여와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민원처리기간 단축**)의회 민원 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민원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처리 절차상 단계 축소 등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바람.

더불어 민원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을 달리하여 내실 있는 민원처리를 하기 바람.

21.(**직원 해외연수 기준정비**)의회사무처 직원 해외연수 대상자를 2014년, 2015년에는 상반기에 모집하였으나, 2016년에는 9월에 모집하여 하반기 정례회 준비 직원들에 대한 기회 제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명확히 확립된 선정기준도 없어 2015년에는 의회사무처장 등 간부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전반적인 개선과 기준정비가 필요함.

22.(**채용의 공정성 제고**)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면접시험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23.(**입법지원요원 전문교육 실시**)입법지원요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자료분석력 등 입법지원기능 보강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기 바람.

24.(**유연근무제 참여율 제고**)의회사무처 유연근무 참여율은 16.7%로 서울시 평균 40.3%에 크게 뒤지는 것임. 참여율 저조 이유 파악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5.(**입법지원 카운슬러 관리 보완책 마련**)뉴딜일자리 일환인 ‘입법지원 카운슬러’의 활용도 저조 및 사무공간 부재 등 관리가 미흡하여 지난 2년간 채용된 27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106.9일이고, 2016년도에는 90일 불과함에 따라 보완책이 필요함.

26.(**입법연구용역 관리 철저**)매년 시행되는 입법연구용역의 계약기간 연장율이 2015년에는 72.7%에 이룸에 따라 처음부터 부실한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계약조건 위반 시 경고, 지체상금 등 행정처분으로 연장율을 해소하고 조례 규정의 이행 철저, 과제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 연구용역 관리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함. 더불어 과제 선정 시 시민공모도 실시하여 과제 제안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7.(**정기간행물 활용도 제고**)의원의 입법·정책 활동 지원을 위해 발간·제공 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단순 보여주기식 책자발간이 이뤄지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함. 의원 만족도·활용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28.(**소식지 제작 및 활용도 보완**)최근 3년간 의회 소식지(4종) 제작을 대부분 동일한 업체와 계약하였고, 강동·송파·양천에 편중배부(28.6%)되어 자치구간 불균형

정도가 매우 심각함.

나아가 전체 예산에서 우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2.4%로 과다함에 따라 소식지 제작과 활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함.

29.(**시민여론조사 활용도 제고**)최근 3년간 시행된 시민여론조사 26건에 대해 건당 평균 1,33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은 8건에 불과하였으며, 2016년에는 여론조사 실적이 5건에 머무는 등 소극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30.(**의회전문도서관 자료관리 개선**)자료 관리에 있어 연체자에 대한 제재나 미반납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홀한 점이 있으며, 신착 자료 등에 대한 홍보와 수요 조사가 부족해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1.(**의원연구단체 관리 철저**)의원연구단체 관리운영에 있어 매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중간보고서를 지연제출 또는 제출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2016년도에 연구단체별로 지원된 예산집행율도 매우 저조하여 관리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음.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12월말까지 제출되는 결과보고서 등을 면밀히 평가해 차년도 지원금 지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더불어 연구활동 우수 연구단체에 대해서도 시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32.(**홈페이지상 법제지원 자료관리 철저**)시의회 홈페이지상의 법제지원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33.(**의정포털시스템 활용도 제고**)의정포털시스템의 활용도가 낮고, 소통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시스템 개선하는 등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특히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비공개로 제출할 경우 다른 의원은 해당 자료를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자료는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34.(**의회 방문기념품 관리 철저**)의회 방문기념품은 일반 입찰로 구매하되,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해 월별·분기별로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수급 간 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고가의 기념품은 구매·재고 현황을 공개하고 수령증을 받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35.(**회의실황 속기 작성**)회의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속기 시 실제 회의석상의 발언이 아닌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기거나 첨부파일로 갈음하는 등 실황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6.(**청소년 의회교실, 민주시민 아카데미 개선**)청소년 의회교실과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에 보다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청소년 민주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재단’에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철저한 자체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37.(조례안 성안 개선)조례입안 지원 기간이 단축되었으나, 팀 내 업무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보이므로 다양한 요인을 점검하여 골고루 업무분장하기 바람.
- 38.(언론사 홍보 강화)4대 일간지 및 방송사에서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사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음. 언론사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함.
- 39.(토론회 수당 지급기준 수립)2015년부터 정책토론회 발제·토론자 등에 대해 적게는 10만원 미만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수당이 일관성 없이 지급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통일된 기준 수립 등이 필요함.

□ 건의사항 ----- 10건

○ 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 4건

1. 직원 경조사에 근조화환 지원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 바람.
2. 정책 추진시 ‘희망서울생활지표’와 연계(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여성직원 휴게실이 없는 일부 자치구에도 조속히 휴게실을 만들어 여성 직원이 일과 쉼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직원 격려를 위해 특정업체의 특정 품목을 집중해서 구매한 것으로 보임. 업체와 품목을 다양화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의회사무처 - 6건

1. 장애인시설공사 후 남성에 비해 여성화장실이 지나치게 협소함.
이와 더불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장애인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해서도 점점 바람.
2. 공보실 예산이 많이 증액됨에 따라 제반 규정 정비와 모바일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의회사무처는 의장·상임위원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반 평의원을 포함한 106명 전체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4. 역대 의원물품을 모아서 전시하는 역사전시관 조성에 대해 검토 바람.
5. 직원 업무태도에 대한 의원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재정 정책업무 연구 분석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방형으로 채용한 것으로 예산재정 전문지, 기획보고서 발간에 있어서 실효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자료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더불어 결산분석 지원계획도 수립하여 의원들을 지원하기 바람.